

	규정	문서번호	TWA-A121
		제정일자	1998. 10. 01.
	교원 징계 규정	개정일자	2018. 07. 09.
		개정번호	4

목 차

제1장 총칙
제2장 징계사유 및 종류
제3장 징계위원회
제4장 징계의결 및 집행
부칙
별표

작성부서	교무처	제정일자	1998. 10. 01
------	-----	------	--------------

구 분	검 토		승 인
직 책	사무처장	교무처장	총 장
서 명			
일 자			

	규정	문서번호	TWA-A121
		제정일자	1998. 10. 01.
	교원 징계 규정	개정일자	2018. 07. 09.
		개정번호	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원대학교(이하 “이 대학교”라 한다) 교원에 대한 징계사항의 공정한 심의 의결로 교원의 근무기강 확립과 엄정한 질서유지를 위하여 교원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법인정관이 정하는 교원(조교포함)에게 적용한다.

② 교원의 징계규정은 다른 규정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징계사유 및 종류

제3조(징계사유)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법령, 정관,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여 학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
2. 고의 또는 과실로 학교에 재산상의 중대한 손실을 끼쳤을 경우
3. 업무상 지득한 사항과 대내외비 사항을 누설하여 학교에 피해를 준 경우
4. 교수 강의와 직무태만 또는 위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
5. 대학방침 위반과 복종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친절 공정의무 위반한 경우
7. 청렴의무 위반 및 품의유지 의무 위반한 경우
8.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위반한 경우
9. 징계처분을 받고 개선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10. 문서 또는 인장을 남용, 위조 또는 변경한 경우
11.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한 경우

② 교원 징계의결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징계의결 요구서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임명권자가 행한다. 이때, 징계의결 요구서에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제4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한다.

② 중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을 말하며 경징계는 감봉, 견책(근신)을 말한다.

③ 징계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규정	문서번호	TWA-A121
		제정일자	1998. 10. 01.
	교원 징계 규정	개정일자	2018. 07. 09.
		개정번호	4

1. 파면 : 확정과 동시에 해고의 예고 없이 즉시 퇴직시킨다.
2. 해임 : 확정과 동시에 본인에게 통보 후, 해임시킨다.
3. 정직 : 정직기간은 1월 이상 3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 교원의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액의 2/3을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재직 중 3회 이상의 정직처분을 받은 때에는 면직시킨다.
4. 감봉 : 보수액의 1/3를 감하여 지급하고,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로 한다.
5. 견책 : 본인의 직무에 종사하며 전과를 반성하도록 반성문을 제출한다.
6. 경고 : 시말서를 받고 장래를 훈계한다.

제3장 징계위원회

제5조(징계위원회 구성) ① 교원의 징계 처분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교육부, 감사원 등 상급기관의 감사결과 징계 요구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총장 제청에 의해 이사장이 징계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교원에 대한 징계사항을 관장하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은 학교법인의 이사와 교원 중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6.09.02.>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학교소속 일반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한다.

제7조(징계위원회 위원장) ① 교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갖는다.

제8조(위원장 직무대행)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규정		문서번호	TWA-A121
			제정일자	1998. 10. 01.
	교원 징계 규정		개정일자	2018. 07. 09.
			개정번호	4

제9조(징계의결의 요구 및 통지) ① 교원 징계의결 요구 또는 신청을 할 때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징계의결 요구서에 의해 임면권자가 이를 행한다.

② 임면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조(징계의결의 기한) 교원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회의개최) 교원 징계위원회는 교원을 징계하고자 할 경우 회의개최 7일전에 징계위원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징계대상자 출석) 징계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출석하여야 한다.

1. 징계위원회가 징계대상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석통지서에 의하여 행한다. 이 경우 출석통지서 사본을 교무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교무처장은 징계대상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2. 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출석요구서의 직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학과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할 수 있으며, 학과장은 지체 없이 이를 교부한 후 교부상황을 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3. 징계대상자가 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을 첨부하고 서면 심사만으로 징계 의결할 수 있다.
4. 징계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 의결할 수 있다.
5. 징계대상자가 해외체제,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기타 사유로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한 후 징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
6. 징계대상자가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대상자는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13조(진상조사 및 의견개선) ① 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

	규정		문서번호	TWA-A121
			제정일자	1998. 10. 01.
	교원 징계 규정		개정일자	2018. 07. 09.
			개정번호	4

도 불응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심문 및 진술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심문 및 진술권을 행사한다.

1. 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자기의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여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3. 징계대상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며 징계 대상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4.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교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증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15조(입증책임) 위원회는 입증책임을 지지 않고는 징계의결 할 수 없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징계의결의 부당성을 입증하지 못함을 이유로 징계사유 입증을 대신할 수 없다.

제4장 징계의결 및 집행

제16조(징계의결) ①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개인별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2/3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교원 징계의결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별지 제3호의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면권자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징계의결시 참작사항) 교원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선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18조(제척사유) 교원 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 징계자와 친족 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9조(위원의 기피 등)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

	규정	문서번호	TWA-A121	
		제정일자	1998. 10. 01.	
	교원 징계 규정	개정일자	2018. 07. 09.	
		개정번호	4	페이지

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③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여부로 교원 징계위원회의 출석 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면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0조(징계양정기준) ① 위원회는 징계대상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선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지 제4호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업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교원사회의 구현 및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및 비위를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

제21조(징계의 감경) 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교원이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행위 당시의 여건 및 기타 사회통념상 거절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수수를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 및 징계 요구서에서 중점 정화대상으로 지정된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훈장 이상의 포장을 받은 자
2.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3. 모범교원으로 선발된 공적 등

제22조(징계의 가중) 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제23조(의결서 작성요령) ① 위원회가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4조(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요령)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징계의결 요구서에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와 그 이유를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규정		문서번호	TWA-A121
			제정일자	1998. 10. 01.
	교원 징계 규정		개정일자	2018. 07. 09.
			개정번호	4

제25조(징계의 집행) ① 임면권자가 제16조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보고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면권자가 법인일 때에는 징계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6.09.02.>

②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별지 제6호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6조(징계의결 요구시 확인사항)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징계대상자를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중점 정화대상으로 지정된 비위 해당여부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적유무를 별지 제7호 서식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7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8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조(재심청구) 징계대상자는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6.09.02.>

제30조(징계사유의 시효) 교원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징계사유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5.05.29., 2018.07.09.>

1.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3.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31조(징계무효처리) 위원회는 징계의결에 불복하여 교원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징계의결이 무효로 확정되었을 경우 대학은 법원의 판결에 의한 조치를 지체 없이 행한다.

1. 부당징계의 판정서가 접수되는 날로부터 징계를 무효 처분한다.
2. 임금은 당연히 소급해서 지급하며 보상금은 법원 판례에 준한다.
3. 대학이 해당기관의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일단 초심 결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규정		문서번호	TWA-A121	
			제정일자	1998. 10. 01.	
	교원 징계 규정		개정일자	2018. 07. 09.	
			개정번호	4	페이지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징계사유의 시효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징계사유의 시효 연장에 관한 적용례) 이 규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징계의결요구서

인적사항	성명		소속		직명		
			생년월일				
			재직기간				
	본적						
	현주소						
징계사유							
징계요구권자의 의견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함.							
200 년 월 일							
학교법인 동원학원 이사장 (인)							
동원대학교 교원 징계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출석통지서

인 적 사 항	성 명	소 속
	본 적	직 명
	현 주소	
출석이유		
출석일시		
출석장소		
기 타		
위와 같이 출석을 통지합니다.		
200 년 월 일		
동원대학교 교원 징계위원회 위원장 (인)		
귀하		

징 계 양 정 기 준

(제20조 관계)

비위의 도 및 과 실 비위의 유 형	비위의 도가 중하 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 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 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 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 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 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나. 기 타	파 면	해 임	정 직 - 감 봉	견 책
	파면 - 해임	정 직	감 봉	견 책
2. 복종의무 위반	파 면	해 임	정 직 - 감 봉	견 책
3. 직장이탈 금지 위반	파면 - 해임	정 직	감 봉	견 책
4. 친절공정 의무 위반	파면 - 해임	정 직	감 봉	견 책
5. 비밀엄수 의무 위반	파 면	해 임	정 직	감봉 -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파면 - 해임	정 직	감 봉	감봉 - 견책
7. 품위유지 의무 위반	파면 - 해임	정 직	감 봉	견 책
8.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 - 해임	정 직	감 봉	견 책
9.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 - 해임	정 직	감 봉	견 책

[별지 제5호 서식]

징계양정 감경 기준

(제21조 관계)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징계양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경된 징계양정
과 면	해 임
해 임	정 직
정 직	감 봉
감 봉	견 책
견 책	경 고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

성 명	소 속	직 명	비 고
주 문			
이 유			
<p>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함.</p> <p>200 년 월 일</p> <p>학교법인 동원학원 이사장 (인)</p> <p>귀 하</p>			

※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이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6.09.02.>

확 인 서

1. 징계혐의자 인적사항

가. 소속 및 직위

(1) 현 재 :

(2) 혐의당시 :

나. 직 급 :

다. 성 명 : 한 자 :

2. 제26조 및 제20조 제2항 규정의 해당 비위 여부

가. 금품 및 향응수수 관계 : (해당됨, 해당 없음)

나. 중점 정화대상 비위관계 : (해당됨, 해당 없음)

다. 기타 혐의내용 :

3. 제21조 규정의 해당 공적과 징계유무

공 적 사 항			징 계 사 항(경고조치 포함)		
포상일자	포상의 종류	시 행 령	일 자	종 류	발 령 처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책임자 : 소 속 직 위 : 성 명 : (인)

징계의결요구권자 : 학 교 법 인 동 원 학 원 이사장 (인)

[별지 제8호 서식]

교원징계의결서(무기명 투표)

해당란에 '○'표 하십시오.

구 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징 계					

20

확 인 :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 (인)